

의안번호	2206519
의 퇴 인	전진숙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 계 번호	24C5721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3,955억원(연평균 3조 2,791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소득인정액의 산정 (안 제6조의3제3항 후단 신설)	28,995	30,830	32,879	34,632	36,619	163,955	32,791
－ 국비	23,996	25,515	27,211	28,661	30,306	135,689	27,138
－ 지방비	4,999	5,315	5,668	5,971	6,313	28,266	5,653

주: 1.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 2.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제3항 (소득인정액의 산정)	○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제소득 산정 시 「기초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제외 ※ (현행) 기초연금액 전액이 실제소득에 포함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3제3항(소득인정액의 산정)	○	○ 최근 생계급여·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수와 소득·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본 추계서에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만 추계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에 대한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”에 “그들이 수령하는 기초연금액”을 곱하여 산출
 - 생계급여는 급여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므로,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져 그만큼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
- (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) 2023년 기준 통계청 「장래인구 추계」¹⁾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 비율(6.82%)이 전망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 -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에 감액(20%)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수급자 수와 부부 동시 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
 - 2023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중 단독가구 수급자(82.9%), 부부 중 1인 수급자(2.0%), 부부 2인 수급자(15.1%) 비율을 적용하여 가구 내 1인 수급자 및 2인 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를 활용

[표 2]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(추정치)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가구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대상 수급자 수	758,223	790,396	826,401	853,388	884,664
－ 단독 및 부부 1인	643,847	671,167	701,741	724,657	751,216
－ 부부 2인	114,376	119,229	124,660	128,731	133,449
가구 환산	662,527	701,035	730,782	764,071	789,0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－ 단독 및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1인당 1가구로 환산하고, 부부 중 2인 수급자의 경우 부부가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인당 1가구로 환산

□ (기초연금액 단가)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(월 334,810원)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²⁾를 적용하여 추계한 후, 개정안이 명시한 대로 기초연금액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금액을 산출

-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·기초연금·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수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움³⁾
- 가구 내 기초연금 1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, 가구 내 부부 2인 수급자 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으므로 감액을 적용

[표 3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1인당 연간 기초연금 제외금액(추정치): 2026~2030년

(단위: 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기준연금액(월)	350,387	357,395	364,543	371,834	379,271
연간 기초연금 제외금액					
단독·부부1인	4,204,644	4,288,740	4,374,516	4,462,008	4,551,252
부부2인	3,363,715	3,430,992	3,499,613	3,569,606	3,641,002

주: 기준연금액은 십원 단위 이하 절사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라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국회예산정책처 2024.10. 경제전망 기준)을 적용

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1	2.0	2.0	2.0	2.0

3) 국민연금·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은 국민연금공단이, 기초연금·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

- 추계 결과,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고려하는 실세소득 중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3,955억원(연평균 3조 2,791억원)으로 추계됨
- 국비 및 지방비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확정예산서 상의 평균 국고보조율(82.76)%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28,995	30,830	32,879	34,632	36,619	163,955	32,791
－ 국비	23,996	25,515	27,211	28,661	30,306	135,689	27,138
－ 지방비	4,999	5,315	5,668	5,971	6,313	28,266	5,653

주: 1.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 2.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